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폐기물해양배출업자 [] 해양폐기물수거업자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승계를 하는 자 (합병 후 새로 설립 되는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승계를 받는 자 (합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권리·의무 승계일			
권리·의무 승계 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합병 [] 기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1부 2. 양도·양수, 상속,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
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